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예천군청

2026. 1.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제 14 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15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 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 16 조(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 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보호장치의 착용·점검 및 교육 등의 업무 수행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 17 조(안전관리자) 제 18 조(보건관리자) 제 19 조(안전보건담당자)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 24 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 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25 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 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29 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공공행정의 경우 현업종사자만 교육대상자에 해당	○ 정기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12시간/반기) ○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4시간 이상), 그밖의 근로자(8시간) ○ 특별교육: 일용직(2시간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종사 일용근로자(8시간이상) 그 밖의 근로자(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2 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4 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6 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해당 작업자의 근로자 참여 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 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 함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미이행 시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 37 조(안전표지의 설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 (금지표지/경고표지/안내표지/지시표지)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하여야 함	5백만원 이하 과태료 (1개소당 10,30,50만원)
제 38 조(안전조치) 제 39 조(보건조치) 제 40 조(근로자의 안전 보건조치 준수)	○ 기계·폭발성물질/전기, 굴착/하역/중량물 취급, 추락/토사붕괴/낙하물 등이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 증기/흙/미스트, 방 사선/소음진동, 정밀공작/단순반복, 환기/채광/조명/보온, 폭염/한파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는 제 38 조(안전조치) 및 제 39 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 보건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 함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5만원 이하 과태료
제 41 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 42 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 54 조(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를 받아야 함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전화팩스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보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57 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 관할지청에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보고 및 거짓 보고: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 63 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 80 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전양해서는 아니 됨.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램핑기 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 84 조(안전인증) 제 87 조(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가·절곡가·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가·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함(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명·모델명·제조 수량·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 93 조(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전단가·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건조설비·롤러가·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14조(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제 115 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화학물질 등 사용 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미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작업장 1개소당) 용기등 경고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125 조(작업환경측정)	○ 시행규칙 별표 21 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 소음(80dB 이상)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 본인의 유해인자 - 반기 1회/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이면 년 1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128 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 크기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미설치: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기준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129 조(일반건강진단) 제 130 조(특수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6개월~24개월) *시행규칙(별표 22, 23) ○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 시 작업 전 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164 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 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서류 등 (3년~30년간 보관)	3백만원 이하 과태료